

지도교수제 시행세칙

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예원예술학교 지도교수제(이하 지도교수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도이념)

이 세칙은 사제간의 대화를 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, 학문에 전념하여 산업 사회에 기여할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3조(구성 및 자격)

- ① 지도교수는 학부(과)장을 중심으로 학과 자체적으로 지도학생에 대한 지정방법 및 세부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,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학협력 조교수를 부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.
- ③ 지도교수는 매 학년도 초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전과 등 모집단위간 이동, 재입학생, 편입생은 그 시점 학기에 학과(부)에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임무)

- ① 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의 신상 및 학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, 면담지도를 통하여 대학생활의 조연자 역할을 하며 학적변동에 대한 관리와 중도 탈락률을 줄이도록 노력한다.
- ② 분담된 학생들을 일대일로 진로적성 및 취업상담을 통해 입학에서 졸업 후 까지 지도한다.
-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업향상과 학사지도에 최선을 다하며 학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.
- ④ 지도교수는 매학기 재학생 1인당 대면 상담 2회 이상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추가 상담은 전화, e-mail 상담을 포함한다.

제5조(전문상담)

- ① 추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부서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1. 학사제도(전공과정 이수, 학점관리, 수강신청, 휴·복학, 자퇴 등)에 관한 상담 - 교무팀
 2. 전입생(편입생, 복학생, 모집단위간 이동 등)에 관한 상담 및 지도 - 교무팀
 3. 학업부진(성적경고)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 - 교수학습지원센터, 학생상담센터
 4. 대인관계, 가치관, 진로탐색, 적성,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상담 - 학생상담센터
 5.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및 향상을 위한 상담 - 교수학습지원센터
 6. 취업 및 진로 상담 및 지도 - 취창업지원센터
 7. 그 밖의 대학생활 상담 - 관련부서

제6조(면담방법)

- ① 지도교수는 지정된 면담시간과 장소를 미리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해당 시간에 학생이 면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지도교수는 면담시간외 이루어지는 면담요청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.
- ③ 면담은 개인 및 집단면담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, 집단면담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타 학생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7조(지도보고 및 자료)

- ① 지도교수는 학생지도 및 면담 결과를 상담일지로 작성하고 학생상담센터로 학기말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관련부서장 및 총장은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지도교수에게 제공하여야

한다.

제8조(정보보호의 의무)

지도교수는 학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내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, 유출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제9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정 2019. 1. 2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